

제3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08. 9. 25.(목), 15:00

2. 장 소 :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이경자 위 원
이병기 위 원
형태근 위 원 (4인)

4. 불참위원 : 송도균 부위원장 (1인)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나. 국민의례

다. 개회선언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취득 인가에 관한 건 -(주)베리아이비의 (주)온세텔레콤 주식취득(2008-31-125)

- 신용협 통신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따라 (주)베리아이비의 (주)온세텔레콤 주식취득 인가를 원안대로 의결함.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에 관한 건(2008-31-126)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주)티브로드중부방송 등 11개사에 대한 공정한 재허가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위촉 결격사유로 '신청법인 또는 구성주주사와 재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자문 또는 용역을 수행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수정하여,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의결함.

<재허가 대상 사업자 : 총 11개사>

구 분	사 업 자 명
CATV (5개사)	(주)티브로드중부방송, 울산중앙케이블방송(주), (주)한국케이블TV모두방송, (주)영서방송, (주)씨앤엠우리케이블티브이
지상파DMB (6개사)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주)와이티엔디엠비, 한국디엠비(주), 유원미디어(주)

※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주요내용

가. 구 성

구 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심사위원(총 8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심사위원(총 7인)	비 고
심사위원장	방송통신위원 (1인)	방송통신위원(1인)	
	방송평가위원 (1인)	-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방 송 분 야 (1인)	방 송 분 야 (1인)	신문방송관련학과 교수
	경 영 분 야 (1인)	경 영 분 야 (1인)	경영,경제관련학과 교수
	기 술 분 야 (1인)	기 술 분 야 (1인)	방송기술관련학과 교수 등
	회 계 분 야 (1인)	회 계 분 야 (1인)	공인회계사
	법 률 분 야 (1인)	법 률 분 야 (1인)	변 호 사
	담 당 과 장 (1인)	담 당 과 장 (1인)	

나. 운 영

- 심사위원회는 비계량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심사평가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심사하고, 필요시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함
- 심사위원회 운영기간(3일)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2008.10.15.(수) ~ 10.17.(금)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2008.9.30.(화) ~ 10.2.(목)

3) 2009년도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2008-31-127)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2009년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지에스강남방송 등 7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2009년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내용

가. 재허가 대상사업자(총 71개사)

- '09. 3.30 허가만료 사업자 : 37개사
- '09. 8.28 허가만료 사업자 : 21개사
- '09.12.31 허가만료 사업자 : 13개사

나. 재허가 심사는 허가기간 동안의 운영실적 및 조건이행 여부, 향후 사업계획을 9인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심사위원회는 재허가대상사업자의 허가만료 기간을 고려하여 3회로 나누어 구성·운영함

다. 심사결과,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에 대하여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재허가를 '거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의결함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2008-31-128)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주)씨제이헬로비전이 신청한 (주)한국케이블TV 모두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고, (주)조선아이앤씨가 신청한 (주)한국케이블TV충청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하여 (주)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주주간 주식매매와 관련한 소송의 법원 확정판결까지 심사 보류함을 원안대로 의결함.

5) (주)KT의 불법스팸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08-31-129)

6) SK브로드밴드(주) [舊하나로텔레콤(주)] 의 불법스팸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08-31-130)

7) (주)LG데이콤의 불법스팸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08-31-131)

-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으로부터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이 불법스팸 전송자의 서비스 이용제한을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보고를 받고,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각각 명하는 것을 의결하고, 날로 지능화하는 불법스팸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함
- 다만,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직접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사실인 점, 조사대상기간인 '06.8월~'07.5월 이후 피심인들의 적극적인 조치로 불법스

스팸 전송 문제가 상당히 개선된 점을 고려하여, 향후 4/4분기중 실태점검을 통하여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에 엄중 제재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2006. 8월~2007. 5월 기간 중,
 - 유선전화 3사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정지나 해지 등 이용제한 조치를 일부 누락하거나 상당기간 지연한 사실(KT 18건, SK브로드밴드 22건, LG데이콤 412건)을 확인하였으며,
 - 유선전화 3사가 서비스를 해지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서비스 재가입 허용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KT는 3개 법인 157회선, 하나로텔레콤은 3개 법인 207회선에 대하여 재가입을 허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위와 같이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조치나 서비스 재가입 관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 다수의 전기통신 이용자들에게 스팸 수신으로 인한 불편을 주고, 스팸삭제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스팸으로 인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신을 방해하는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사. 보고사항

1) 긴급안전 상정 절차에 관한 사항

- '긴급안전'의 현행규정 및 운영사례에 대해 광진희 의안조정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회의공개 원칙 및 합의제 기구의 설립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 차기회의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로 함.
 - 긴급안전 제안자는 처리의 시급성 및 안전 사전 미제출 사유를 해당 안전이 상정된 위원회에 보고하고,
 -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위원이 의안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가급적 회의개최 전에 긴급안전 제목 및 내용을 통보하고, 긴급안전 작성완료 시 지체없이 각 위원들에게 제출

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차식 네트워크정책관으로부터 인터넷주소자원이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소유되거나, 사회질서와 공공복리를 침해하는데 사용되는 등 부적합하게 활용되는 사례 발생으로 인터넷주소자원의 합리적 할당 및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을 추진하도록 함.

※ 주요내용

- 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정의 및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 및 제4조)
- 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폐지(안 제5조 및 제6조)
- 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 신설(안 제9조)
- 라. 인터넷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메인등록 실명제를 도입하고, 음란, 비속어 등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려 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 11조, 제11조의2)
- 마.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등록·보유,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며,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해당 도메인이름 말소뿐만 아니라 이전청구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2조)
- 바. 강제분쟁조정제도 도입 등(안 제18조, 제20조)

3)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추진에 관한 사항

- 임차식 네트워크정책관으로부터 인터넷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래 정부주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시민단체·언론기관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추진체계 등 주요내용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차기 회의에서 다시 보고하기로 함.

아. 기 타

1) 차기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10월 1일(수)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17:35)